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803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508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803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가소11353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김병준, 이민, 황대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수영

변론 종결 2020. 6. 17.

판결 선고 2020. 7. 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가소11353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6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4. 변호사 C과 원고의 아들 D의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5형제66666호 외국사절협박,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를 수임료 3,000,000원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C에게 위 수임료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C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E의 소속 변호사인 피고가 D의 기소 전 수사 단계의 변호를 담당하였으며, 피고는 2015. 7. 14. 서울지방경찰청에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서울지방경찰청 사무실에서 D를 접견하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

다. D는 2015. 8. 11. 이 법원 2015고단4685호 협박죄로 기소되었고, C과 피고는 2015. 8. 12.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D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2015. 7. 14.부터 사임서를 제출한 2015. 8. 12.까지 4차례의 경찰 피의자신문과 2차례의 검찰 피의자신문 등에 참여하였고,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D를 여러 차례 접견하였으며, 4회에 걸쳐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긴급체포 과정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6. 11. 11. D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협박 미수죄를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법원 2016노4872호)은 2019. 10. 17.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3. 12. 대법원 2019도17613호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자백을 계속 강요하였고,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를 묵인하였으며 수사 도중 자리를 떠나거나 지각을 하는 등 불성실한 변호를 하였으며, 핵심 증거물인 노트북 재이미징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수임료 3,000,000원 중 청구금액인 2,666,64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변호인 선임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임료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①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은 원고의 아들인 D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변호를 위임하는 계약으로 D가 기소된 2015. 8. 11.경에는 이미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변호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수임료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가 2015. 7. 14.부터 2015. 8. 12.까지 4차례의 경찰 피의자신문과 2차례의 검찰 피의자신문 등에 참여하였고,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있던 D를 여러 차례 접견하였으며, 4회에 걸쳐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긴급체포 과정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지급한 수임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경과, 피고가 투입한 시간과 노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가 D에 대한 변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피고가 D에게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D가 무죄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⑤ 더구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C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수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는 점(설령 원고의 청구를 피고 개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에 대한 변호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수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우현

판사허일승

판사신한미